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131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총

피고B

변론 종결2022. 6. 17.

판결 선고2022. 8.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5. 11. 18. C과 대출금 300만 원, 대출만료일 2020. 11. 18., 이자율 연 34.894%, 연체이자율 연 34.894%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2364). 이에 위 법원은 2016. 7. 5. '3,256,331원 및 위 금액 중 2,996,372원에 대하여는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6. 확정되었다.

다. D가 2016. 11. 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후 E는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E가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는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C의 모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 F이 2020. 3. 5. 사망하자, F의 자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1. 1. 20. 접수 제6476호로 2020. 3.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권자 G,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주택임차권등기는 2021. 4. 29.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H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H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F의 사망 전 F의 간호를 도맡아 하는 등 피고의 기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기여분 주장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동상속인간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해야할 정도로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마쳐져 있던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액은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인 7,6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보전채권액 및 가액배상금액인 8,200,934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다.

②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8,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택임차권의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5지분 가액 가운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7,600,000원[= 38,000,000원(= 138,000,000원 - 100,000,000원) × 1/5]이 된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와 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C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만 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수진

별지